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폐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06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폐지	2
※ 참고자료	
1.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12

I .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폐지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5년마다 ----- ----- ----- ----- ----- -----.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③ ----- ----- -----

현행	개정안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	----- --. <단서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력·조정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u>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개요]

구 분	내 용
구 성	구성인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위원: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

-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내 용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비공무원 위원 임기: 2년
기 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 황	2023년 4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2025년 1월 현재까지 미구성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되지 않음)

○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체부는 동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필요한 경우 문체부 정책자문위원회²⁾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 5년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는 연 1~2회 개최되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안), 학교 예술강사 사업 관련 사항 등임.

2)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구로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주요내용(실적)
2019년	○ 출석회의(2회) - '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안), '20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20년	○ 서면회의(2회) - '20 문화예술교육시행계획(안), '2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지원계획(안)
2021년	○ 서면회의(1회), 출석회의(1회) - '21년 문화예술교육시행계획(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2년 학교예술강사 사업 관련 사항
2022년	○ 서면회의(1회) - '22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안)
2023년	○ 출석회의(1회)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안) 심의

※ 동 위원회는 2023년 1월 위원회 임기 만료 후 미구성됨에 따라 2024년 이후 개최실적 없음.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³⁾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⁴⁾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3)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 위원회 중 문체부 소관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위원회가 선정되었고, 이 중 기정비된 2개 위원회(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제22대 국회 문체부 소관 위원회 정비 정부입법 현황]

연번	위원회명	소속	위원장 (임기)	위원수 (공무원 제외)	정비방안
1	국가도서관위원회	대통령	윤희운 (‘24.4~’26.4)	15명	소속 변경 (대통령→부처)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대통령	미구성	-	소속변경 (대통령→총리)
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부처	문체부장관	14명	정부협의체 전환
4	뉴스통신등록취소심의위원회	부처	문체부1차관	7명	비상설화
5	공공디자인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6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7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8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9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10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1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14조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도록 한바, 개정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 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 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앞에서 설명한 2022년 정부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5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 시 비록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지만,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축소로 비추어질 우려에 대한 지적,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 등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동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 아울러, 2023년 2월 이후 동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문체부가 2023년 4월 제3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동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데에 기인하며, 이와 같은 위원회 미구성에 따라 2024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바 있으므로, 문체부는 법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청취 및 안건 논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이 법 제2조제1호 정의규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하고, 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 중 한 명을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공무원으로 하는 등 문화예술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교원·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교육

5)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3.3.21.) 참조

분야의 위원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시행에
교육 분야의 이해관계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교육 분야 공무원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 에 관한 법률안 (2117676)	정부 (2022. 9.30.)	○ 문체부 소관 행정위원회 15개 정비(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포함)	(상임위) • 상정('22.12.16.) • 소위('23.03.21.) • 임기만료폐기	• 각 위원회별 회의횟수, 실적, 유사·중복 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필요